
공정거래 CP 모니터링 운영지침

제 · 개정 일자 : 2025. 7. 24.

제 · 개정 번호 : 01

2023. 11. 1. 제정

2025. 7. 24. 1차개정

남양유업 주식회사

CP 모니터링 운영지침

[시행 2025.7.24.] [CP운영지침 제4호 2025.7.24.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기준과 절차를 준수 (이하 “CP준수”라고 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치 함으로써, 위법 가능성 행위를 조기에 발견조치 및 예방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CP준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과 권한)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 CP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정기 모니터링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수시·특별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함) 계획 및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 해야하며, 계획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보고하고, 결과는 CP 위반 발견되어 후속조치가 필요할 때 및 후속조치 마련한 때 보고한다. 단, 모니터링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보고 없이 모니터링 종결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에게 위 2호의 계획 보고 후 모니터링 대상 및 관련부서를 점검·조사·자료제출 요구 등(이하 “점검”이라 함)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협력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예정 부서에 모니터링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예비조사를 위 2호의 계획 보고없이 할 수 있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모니터링에 필요한 점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실시중에 CP 위반행위의 중단 등을 위해 필요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모니터링 대상부서에 CP 준수를 위한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준수를 위해 자율점검 모니터링 대상부서를 지정하고 자율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함)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부서는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해야한다.
2.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상부서 및 관련부서를 점검할 수 있다.
3. 전담부서는 CP 위반 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해야한다.
4. 전담부서는 CP 준수를 위한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해야한다.

③ 모니터링 대상부서 및 대상자(이하 “대상부서”라 함)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부서의 점검 및 사전 예비조사에 협조 해야한다.
2. 대상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CP 준수를 위한 개선요구시 적절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에 따라 개선계획을 이행 해야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자율점검 을 요구받은 부서도 위 1호 및 2호를 준용한다.

④ 모니터링 예정인 부서 또는 대상 업무와 관련된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함)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점검 및 사전 예비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3조 (모니터링 종류)

모니터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모니터링 : 연1회 정기적으로 CP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이다.
2. 수시 모니터링 :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전담부서가 일상적인 업무 수행중 인지하게 된 CP위반 리스크에 대하여 조치·예방 필요시 점검하는 활동이다.
3. 특별 모니터링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사회적으로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 마련 필요시 점검하는 활동이다.
4. 자율점검 :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요구에 따라 일정기간 부서 스스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자율준수관리자가 이를 감독하는 활동이다.

제4조 (모니터링 담당자)

- ① 모니터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담당자로 포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② 모니터링 담당자는 점검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4.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점검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모니터링 및 점검과정에서 권위적·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6. 점검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모니터링 절차)

① 계획 수립

1. 정기 모니터링 계획은 연간 CP운영계획에 포함하되 대상 부서선정 및 점검범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모니터링 실시 전 개별 계획으로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수시·특별 모니터링은 필요시 개별 계획으로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CP리스크평가 결과 리스크수준이 높은 부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 담당자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인원으로 모니터링 담당자를 구성하고 점검 및 조사 권한을 위임한다.

③ 모니터링 통지

1. 모니터링 담당자가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제출 요구하거나 대상부서를 현장방문 점검하는 경우,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2. 모니터링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방문 점검시, 점검의 목적·대상·내용을 대상 부서에 최소 1일 전 통지해야 하며, 모니터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대상 부서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 실시

1. 모니터링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위해 대상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점검 하고, 관련부서에도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2. 모니터링 담당자는 모니터링중 확인된 CP위반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행위의 종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모니터링 결과보고

모니터링 담당자는 모니터링 결과 대상부서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⑥ 모니터링 종결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 CP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 후 모니터링을 종결한다.

제6조 (개선요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가 제6조 제6항에따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위반사항 및 후속조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해야하고, 대상부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업무절차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대상부서에 개선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CP 리스크에 대해 개선요구문서(이하 “개선요구서”라고 함)로 모니터링 대상부서의 장 및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본 조 제②항의 개선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모니터링 목적
2. 모니터링 일시와 대상부서(대상부서)
3. 모니터링 기준이 되는 규정 및 표준
4. 모니터링 범위 및 내용
5. CP 예상 리스크 및 관련 법령 등

6. 개선계획 회신기한

- ④ 모니터링 대상부서의 장 및 해당자는 CP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 및 완료 예정일을 개선보고서로 작성하여 모니터링 담당자에 기한내 회신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개선보고서의 계획이 CP 리스크 재발방지 및 예방에 적절한지 검토하여 본 조 제②항 내지 제④항의 조치를 다시 할 수 있다.

제7조 (모니터링 결과 보고)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개선보고서 등에 근거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본 조 제①항 보고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제8조 (리스크 관리)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해당 리스크 관리를 위해 CP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 (자율점검 절차)

- ① 자율점검 대상부서 지정·통지

자율준수관리자는 CP리스크평가 결과 리스크수준 “중” 이상인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시 대상부서를 지정하여 자율점검지정통지서로 통지한다. 자율점검지정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지정 목적

2. 자율점검 필요사항

3. 자율점검 실시주기 및 개시일 · 종료일

4.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회신기한

② 자율점검 계획 회신

자율점검 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자율점검 실시계획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 문서로 회신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④ 자율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자율점검 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자율점검지정통지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실시계획에 따라 자율점검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⑤ 자율점검 결과 모니터링

자율준수관리자는 제출된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⑥ 자율점검 종료

자율점검지정통지서에 기재된 종료일에 종료한다.

제10조 (제재처분 및 인센티브)

CP모니터링 결과 CP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CP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11. 1.부터 시행한다.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